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안) 심사보고서

1997. 3. 12.
시민보사위원회

1. 審査經過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7년 2월 27일 영등포구청장 제출
- 나. 회 부 일 자 : 1997년 3월 3일 회부
- 다. 상 정 일 자 : 제48회 임시회 제1차 시민보사위원회 상정 의결

2. 提案說明의 要旨(제안설명자 : 보건소장 허숙조)

가. 제안이유

- 보건소법 및 보건소법시행령이 각각 지역보건법 및 지역보건법시행령으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두어 구청장의 자문역할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함.

나. 주요골자

가. 기능(안 제2조)

- 지역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자문
-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자문
-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자문
- 기타 구청장이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자문

나. 구성(안 제3조)

- 구성원수 :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
- 위 원 장 : 부구청장
- 부위원장 : 보건소장
- 위 원 : 지역주민(구의회 의원), 보건의료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 보건의료 관련 전문가 및 관계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임명)
- 임 기 :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함.

다. 회의소집 및 의결정족수(안 제5조)

- 회의소집 : 정기회의 연 1회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
- 정 족 수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개회,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의결

라. 소위원회(안 제6조)

-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를 위해 소위원회 소집가능
- 위원 5인이상 9인 이하로써 구성
-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위원장이 지명

마. 간사 및 서기(안 제7조)

- 간 사 : 소관사무 주관과장(보건행정과장)
- 서 기 : 주관과의 주무계장(보건기획계장)

바. 자료제출의 요구 등 (안 제9조)

- 위원회의 필요시 관계 공무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또한, 필요시 관계 공무원이나 이해관계인의 출석 설명 가능.

3. 專門委員의 檢討報告 要旨(전문위원 : 유 재 한)

위원회의 설치 근거는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보건소법 시행령이 지역보건법 시행령으로 전문 개정됨에 따라 지역보건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1항내지 제5항의 근거에 의하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여 구성하고 운영하도록 하는 바, 조례안 제2조의 기능에 속한 내용을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여 지역보건의료 시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들을 협의 결정하여 지역의료사업을 돕는 역할을 하는 안이라고 하겠습니까.

제1조에서부터 제11조까지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내용이나 이중 제6조(소위원회)는 소위원회 구성에 있어 2항에 위원장이 임의로 위원 중에서 선출하여 5~9인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으며 3항에는 소위원회 위원장을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2항과 3항 모두가 민주 방식에 의거 선출하고 추천하여 결정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2항은 위원장이 선출하며 하기 보다는 위원의 호선, 또는 추천에 의하여 라고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며, 3항은 위원장이 지명한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위원의 추천에 의하여 위원장을 임명한다로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외의 다른 내용은 상위법에 의거되는 내용이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4. 審查結果 : 수정 안 의 결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1997. 3. 12.
시민보사위원회

1. 修正理由

- 위원회 성격이 자문위원회라 하나 의사결정 방법과 진행등이 민주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제6조 2항과 3항중 소위원회 구성과 위원장 선출에 대하여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구 칭제출 원안대로 함.

2. 修正主要骨子

- 안 제6조 2항중 “위원회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선출하며”를 “위원회 위원의 호선에 의하여”로 수정함.
- 안 제6조 3항중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를 “위원의 추천에 의하여 위원장이 임명한다”로 함.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안)에대한수정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6조 제2항중 “위원회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선출하며”를 “위원회 위원의 호선에 의하여”로 하고, 동조 제3항중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를 “위원의 추천에 의하여 위원장이 임명한다”로 한다.

<이하 생략>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안)

의안 번호	118
----------	-----

제출년월일 : 1997. 2. 27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제정이유

보건소법 및 보건소법시행령이 각각 지역보건법 및 지역보건법시행령으로 전면개정됨에 따라 우리구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두어 구청장의 자문역할을 수행하게 하기위해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함

2. 주요골자

가. 기능(안제2조)

- 지역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자문
-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자문
-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에 관한 자문
- 기타 구청장이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자문

나. 구성(안제3조)

- 구성원수 :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
- 위 원 장 : 부구청장
- 부위원장 : 보건소장
- 위 원 : 지역주민(구의회 의원), 보건의료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 보건의료 관련 전문가 및 관계공무원중에서 구청장이 위촉(임명)
- 임 기 :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함

다. 회의소집 및 의결정족수(안제5조)

- 회의소집 : 정기회의 연 1회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
- 정 족 수 : 재적의원 과반수출석 개최, 출석의원 과반수찬성 의결

라. 소위원회(안제6조)

-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의 심의를 위해 소위원회 소집가능

- 위원 5인이상 9인이하로써 구성
-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

마. 간사 및 서기(안제7조)

- 간 사 : 소관사무 주관과장(보건행정과장)
- 서 기 : 주관과의 주무계장(보건기획계장)

바. 자료제출의 요구등(안제9조)

- 위원회의 필요시 관계공무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또한, 필요시 관계공무원이나 이해관계인의 출석설명 가능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지역보건법 제3조
- 지역보건법시행령 제2조제1항 내지 제5항

나. 합의사항 : 해당없음

다. 예산조치 : 위원회운영수당 기확보('97년 예산)

라. 조례(안) : 별첨참조

첨부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안)

제 1 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조 및 지역보건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등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 1. 지역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 2.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 4. 기타 구청장이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3 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 ③ 위원은 지역주민, 보건의료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 보건의료관련 전문가 및 관계공무원으로 구성하며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그 임기를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⑤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책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 4 조 (위원장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하며 그 의장이 된다.

-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심의안건을 소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5 조(회의소집 및 의결정족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원회의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제 6 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선출하며 5인이상 9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 ④ 소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소위원회에 위임된 사항중 소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의결을 위원회의 의결로 보며, 의결사항은 차기 위원회 개최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 7 조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를 둔다.

- ② 간사는 서울특별시영등포구보건소조직제규칙에 의하여 소관업무를 주관하는 주관과장이 되고 서기는 주관과의 주무계장으로 한다.

- ③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④ 간사는 위원회 및 소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 8 조 (수당과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9 조 (자료제출의 요구등)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이나 이해관계인 기타 참고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제 10 조 (회의록) 간사는 회의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 11 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운영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